

수 신 기관장

제 목 [공문] 2019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아대책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협력하여 '소외계층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복지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사회 각 계각층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주관기관) 기아대책은 1989년에 설립되어 국내 최초 해외를 돕는 NGO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인정 받아, 긴급구호 및 해외, 국내, 북한을 활발히 돕고 있습니다.

(추치기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는 생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하고, 생애보장 정신을 지향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뜻을 모아 2007년에 설립된 기구로 소외계층 지원, 어린이/청소년 복지, 자살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귀 시설의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학업성취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업에 필요한 교육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2019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나.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시설 추천 아동

- 수급자격 가정 학생 (기초, 한부모, 차상위)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이내인 학생
- 기관별 수혜인원을 최대 10명으로 제한함

다. 지원내용 : 1인 500,000원 (교육비, 급식비, 교복비)

라. 신청기간 : 2019년 4월 15일(월) - 5월 17일(금)

마. 선정절차

- 신청접수 :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http://edu.kfhi.or.kr/>)
 - 결과공지 : 2019년 5월 29일(수)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및 개별안내)
 - 지원시기 : 2019년 5월 31일(금) (*추천기관 계좌로 송금)
 - 결과보고 : 2019년 9월 27일(금)
- (* 학교 추천은 일정이 상이하니 불임의 추진세부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문의 : 기아대책 교육개발팀 02-2085-8288, edu1004@kfhi.or.kr

주 관 :  기아대책

주 최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불임. 추진세부계획 1부.. 끝.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담당자 이 준 동

팀 장 오 정 은

본부장 김 민 영

부문장 고 수 미

시 행 공문-한기대2019-0109호 (2019.04.12)

우 편 : 07554

주 소 :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59다길 109

홈페이지 : <http://www.kfhi.or.kr>

전 화 : 02-2085-8288

팩 스 : 02-517-4765

E-mail: edu1004@kfhi.or.kr / 공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1. 사업명 : 2019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2. 사업목적 :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에게 학업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지속적인 학업성취의욕을 고취하고자 함.
3. 사업기간 : 2019년 4월 1일 - 10월 31일 (약7개월)
4. 사업비 : 금700,000,000원(금칠억원)
5.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가. 대상자수 : 총1,400명 (1인당 장학금 50만원)
 - 나.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 재학생(기관 및 학교장 추천)
 - 1) 수급 자격 가정 학생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 2) 가구 소득 인정액이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학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중위소득 100%, [표8] 참조)
 - 다. 지원내용 : 교육비, 급식비, 교복비 등 학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 (*예체능 특기 비용 포함)

[표1] 교육비 사용 항목

교육비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 입학금	교과서	부교재비	수강료	학용품	예체능 장비구입*	급식비	교복구입비
학교장 고지 금액	교과서	참고서 등	학원 및 레슨비	학용품	분야별 필요장비	급/간식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라. 항목별 지원금액 상한액(원)

[표2] 항목별 상한 금액

	교육비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교과서	부교재비	수강료	학용품	예체능	급식비	교복비
중학생	-	-	200,000	500,000	100,000	500,000	300,000	300,000
고등학생	500,000	150,000	200,000	500,000	100,000	500,000	300,000	300,000

- *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급여 내용을 참고하여 항목별 연간 상한금액을 산정함
- * 1인당 장학금 50만원을 위 항목별 지원금액 상한액에 근거하여 지출하여야 함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대상자도 신청 가능

6. 지원방법 : 추천 학교 및 시설/기관 법인계좌로 지원금 송금

[표3] 추천기관별 지원내용

추천경로	지원 시기	추천인원	1인지원액	선정인원	선정비율	지원총액
학교추천	2019.6.28.(금)	기관별 최대 10명	500,000	840	60%	420,000,000
시설/기관추천	2019.5.31.(금)	기관별 최대 10명	500,000	560	40%	280,000,000
총계				1,400	100%	700,000,000

- * 지원된 현금으로 지원품목 구입 후 영수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요망
- * 선정비율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7. 대상자 모집

- 시/도 교육청(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통한 추천
- 기관 및 시설장 추천 (복지관, 아동/청소년 시설 등)
- 생명보험사 후원시설 기관장 추천

8. 심사 및 선정 : 추천 대상자 중 지원대상 기준 적합성 심의

- * 기아대책, 생명보험사 운영위원회 구성
- * 지원필요성, 긴급성, 적합성 : 가구형태, 보호유형, 경제사항 등 고려

9. 일정 (기관신청 / 학교신청)

가. 신청기간 : 2019. 4. 15(월) ~ 5. 17(금) / 5. 20(월) ~ 6. 14(금)

나. 심사기간 : 2019. 5. 20(월) ~ 5. 28(화) / 6. 17(월) ~ 6. 25(화)

다. 심사결과 공지 : 2019. 5. 29(수) / 6. 26(수)

*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 (edu.kfhi.or.kr) 공지사항 게시 및 기관담당자에게 MMS 발송

라. 지원일정 : 2019. 5. 31(금) / 6. 28(금) ※ 추천기관 계좌로 지원금 송금

마. 결과보고 : 2019. 9. 27(금)

바. 사업일정

[표4] 사업일정

구분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사업계획	▶						
네트워크 및 홍보	▶	▶	▶				
대상자 모집	▶	▶	▶				
선정 및 지원		▶	▶				
결과보고			▷	▶	▶	▶	
사업평가							▶

10. 구비서류안내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서류는 3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만 인정

- 신청접수 당월을 제외한 이전 3개월(2019년 1월 이후) 발행 서류부터 가능함(2018년 이전 서류 불가)

2)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증빙서류 제출 시 뒤 6자리는 *표시로 발급

나. 신청 구비서류

[표5] 신청시 구비서류

	기관	개인
필수	□ 추천 학교 및 기관 사업자등록증 1부 □ 추천 학교 및 기관 통장사본 1부	□ [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 □ 경제상황 및 보호유형 증명서류(하단 [표6] 참조)
선택		□ 성적표 수상내역(상장사본), 봉사활동 증명서 등의 자기계발과 성장가능성을 나타내는 기타 서류

[표6] 경제상황 및 보호유형 증명서류

경제상황 증명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 아래의 서류 중 1부를 선택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 자활근로자확인서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저소득 (중위소득 100%)	※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증을 소지할 경우 모두 제출 • 부모의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확인서 ([표8] 중위소득 100% 본인부담금표 참조)
	* 학교 추천의 경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교육급여 대상여부 화면 캡처로 대상자의 소득 증빙 가능	
보호유형 증명	*해당자만 추가제출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서류상 가족에 해당하는 대상자 장애증명 제출 가능함) • 한부모 : 한부모가족증명서 • 다자녀/조손/소년소녀가장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본인관계명시) • 탈북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다문화 : 다문화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 중증질환 및 기타 사유는 추천서 상세 기재 후 증빙서류 제출요망 (예: 치매-장기요양인정서, 암-진단서 등)

12. 신청 및 제출방법 : 아래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서작성 및 구비서류 스캔 후 첨부파일 제출

※ 신청 홈페이지이치 링크주소 : <http://edu.kfhi.or.kr>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 개인 신청은 불가하며 반드시 학교나 기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함

13. 지원사업 결과보고

가. 제출서류 (*양식 추후공지)

- 결과보고서, 현금출납부, 영수증, 대상자 감사편지 및 사진

나. 증빙서류

- 지원품목 지출 영수증(추천 학교 및 기관별 결과보고 양식에 첨부하여 제출)
 - ※ 결과보고 및 증빙서류 제출방식은 대상자 선정 발표 시 별도 추가 안내 예정
 - ※ 결과보고 서류는 2019. 9. 27(금)까지 기아대책 교육플러스 홈페이지로 제출
 - ※ 추천기관에서 지원금을 대상자에게 전달할 때는 반드시 계좌로 송금한 후 '이체확인증'을 제출해야함

[표7] 적격증빙 영수증 예시

증빙가능	증빙불가
※ 영수증 발행일자 『2019년 1월 ~ 9월』 이내만 증빙가능 1. 추천기관 및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2. 현금지출 시, 추천기관 및 학교 고유번호 (예)2**-8*-0****로 발행한 현금영수증 or 세금계산서 3. 학교 공동구매 지출의 경우, 관련 안내 및 통지문, 납입증명서	1. 개인 신용 및 체크카드 구매 영수증 2. 개인 현금영수증 처리된 증빙서류

14. 유의사항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15. 담당 및 문의처 : 기아대책 교육개발팀 (02-2085-8288 / edu1004@kfhi.or.kr)

별첨자료

[표8]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의 소득 100% 판정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07,000	94,808	75,719	95,962
3인	3,760,000	121,528	115,254	122,961
4인	4,614,000	150,844	151,910	152,850
5인	5,467,000	177,419	184,185	180,259
6인	6,321,000	206,091	219,834	209,942
7인	7,174,000	236,255	257,406	241,925
8인	8,028,000	236,711	287,857	272,807
9인	8,881,000	295,580	321,364	310,158
10인	9,735,000	326,151	355,813	348,036

※ 2019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비스 대상자]

-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연 락 처 :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이하 “기아대책”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의거하여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절차를 준수하며,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이용목적외의 용도로는 절대 이용·제공 되지 않습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기 본인은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의 지원대상으로 등록하고 아래의 내용에 동의한다.

- 1. 지원을 위한 개인 정보수집에 협조한다.
(제공한 정보는 ‘생명보험사회공헌사업’ 지원 신청용도 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등	사업 신청·지원 및 관리 등의 업무	10년

- 2. 개인정보 관련사항 허위 기재 및 타인양도, 학업지원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 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 3. 본 사업 지원금 수령 후 결과보고를 위한 정보수집에 협조한다.

<정보 주체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제22조제5항에 따라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위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아동으로부터 수집이 가능함.

법정대리인 성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정보주체와의 관계
(인 또는 서명)		

2019년 월 일

서비스 신청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사)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귀하